

PRUGIO

평택 용이 2차 푸르지오 대출안내

대출처	세대별 대출한도	대출조건		
		대출금리 (2008.5.16 CD유통수익률기준)	대출기간	대출시기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분양가의 40%이내	年6.27% (3개월CD변동금리+0.90%)	3년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중도금 납부시 대출실행 ▶ 매차수 중도금 납부시
롯데캐피탈 (제2금융권)	분양가의 10%이내	年7.27% (3개월CD변동금리+1.90%)		
모기지론	분양가의 60%이내	年6.27% (3개월CD변동금리+0.90%)		

- 분양가 6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DT총족시 분양가의 최고 60%까지 대출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상품을 신청할 수 있음. (계약시 별도안내)
- 분양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DTI 40% 적용(주택투자지역)
- 대출 미신청 및 개인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금은 계약자본인이 직접납부
- 입주담보대출전환 포함시 대출한도는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택 용이 2차 푸르지오  
**PRUGIO**  
| 분양안내 |



문의전화 031)655-0931 [www.PRUGIO.com](http://www.PRUGIO.com)

■ 건축연면적 : 165,162.99㎡ ■ 용도: 공동주택 ■ 자금관리 : 시행, 시공, 농협 공동관리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용이도시기개발지구 43블럭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 및 관련된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택 용이 2차 푸르지오 입주자 모집공고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건축과 2008 - 10401호(2008.4.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도시개발사업 43블럭 1,2,3 롯트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18층 16개동 총 9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자녀 특별공급 28세대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6항에 의거 주택공급 세대수의 3%인 28세대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3자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 번호 (모달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 지분 (㎡)	동 구분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총수	세대별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10%)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 면적	대지비		건축비	계	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		
				전용 면적	주거 공용	소계									계약시							2009.5				2009.5	2009.5
민영주택	21925-01	210801048801	10.372	84.8461	25.5301	10.372	36.5981	146.9743	53.8274	201,203,205,206,212,218,214,215	18	1층	13	120,687,000	126,361,000	248,0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74,800,000		
												2층	13	120,687,000	136,361,000	258,0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76,800,000
												기초층	18	120,687,000	142,361,000	283,0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79,900,000
												최상층	13	120,687,000	156,361,000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000,000
	21925-02	210801048802	15.5226	84.9406	30.6020	15.5226	36.6102	152.1528	53.6745	202,204,207,216	18	1층	7	120,743,000	126,257,000	248,0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74,800,000		
												2층	7	120,743,000	136,257,000	258,0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76,800,000	
												기초층	12	120,743,000	142,257,000	283,0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79,900,000	
												최상층	8	120,743,000	156,257,000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000,000	
	21925-03	210801048803	12.8868	100.0633	29.8235	12.8868	43.1620	173.0488	63.2445	201,203,205,206,212,218,214,215	18	1층	13	142,274,000	187,260,000	303,0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2층	13	142,274,000	170,260,000	303,0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3,900,000	
												기초층	19	142,274,000	179,260,000	322,0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800,000	
												최상층	13	142,274,000	195,260,000	308,0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21925-04	210801048804	130.0114	100.1433	29.8681	130.0114	43.1955	173.2078	63.2981	203,205,206	18	1층	3	142,388,000	187,260,000	303,0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2층	3	142,388,000	170,260,000	303,0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3,900,000			
											기초층	4	142,388,000	179,260,000	322,0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32,200,000	96,800,000			
											최상층	3	142,388,000	195,260,000	308,0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21925-05	210801048805	1575.018	129.9983	27.5325	157.5018	56.0618	213.5636	82.1478	208,209,210,211	18	1층	8	184,796,000	185,204,000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0,000,000				
											2층	8	184,796,000	197,204,000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800,000			
											기초층	12	184,796,000	209,204,000	394,0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18,200,000			
											최상층	8	184,796,000	228,204,000	403,0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3,900,000			
21925-06	210801048806	162.8888	134.6927	28.2061	162.8888	58.0949	220.9897	85.1269	208,209,210,211	17	1층	8	191,490,000	191,503,000	383,0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2층	8	191,490,000	203,503,000	386,0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38,600,000	118,500,000			
											기초층	10	191,490,000	25,503,000	407,0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000,000			
21925-07	210801048807	167.412	138.6352	28.7790	167.412	59.7998	227.211	87.651	208,209,20,21	18	최상층	8	197,100,000	238,888,00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0,800,000					

평형 환산방법	110.3762㎡	115.5226㎡	129.8868㎡	130.0114㎡	157.5018㎡	162.8888㎡	167.4112㎡
㎡ × 0.3025 또는 ㎡ ÷ 3.3058	(구)33.39평형	(구)34.95평형	(구)39.29평형	(구)39.33평형	(구)47.64평형	(구)49.27평형	(구)50.64평형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세대별 분양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등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샷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형의 표기면적은 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시하였음.
- 전용면적은 안목차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중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단,중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 총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리인의 최상층 총수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감시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입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감시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총으로 간주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소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지지분은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경기도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03.6.7)되어 분양관련매 금지규정이 적용되며, 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한(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 또는 2002.9.5 이후 청약관련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됨.

## ■ 청약시 유의사항

-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한(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 또는 2002.9.5 이후 청약관련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됨.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형국 등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가정형국별 적용기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정형국 : 청약가점제 적용내내 참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5. 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 재혼으로 생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 공급대상 : 총 28세대

주택형	110.3762㎡	115.5226㎡	129.8868㎡	130.0114㎡	157.5018㎡	162.8888㎡	167.4112㎡	합 계
공급세대	7	5	7	2	4	3		28
경기도	4	2	3	1	2	2		14
서울시	2	2	3	1	2	1		11
인천시	1	1	1					3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예)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 각각 공급함.
-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3자녀 특별공급물량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 처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신청점수는 '세대 1건만 가능하며, 이점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 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③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보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배정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분리세대, 자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 ⑥ 장애인등록증사(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⑦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⑧ 신분증 및 도장
  - 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 변동내역 표시 분)
- ※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성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배정기준표(신청시 배정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정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비고
평정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5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의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3) : 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5. 28)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경기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단, 수도권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주지역 해당 청약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점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한

**■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름.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계	84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 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이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3)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구분	감점항목		감점점수	판단방법
	기준	소유주택수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 세대원 중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감점)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 2주택 이상을 소유에 속한 자가 청약 2순위로 신청 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3호 또는 3세대	-15	
		: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쿠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권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 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서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쿠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연적구분(전용면적)	청약 관련 예금 및 신청 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 영 주 택	3자녀 특별공급	전주택형 (138.6352㎡제외)	· 특별공급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물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2008.6.2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 장소 : 견본주택 · 2008.6.2(15:00)	
	1순위	공통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천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천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천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평택시/ 수도권	2008.6.3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l2you.com  - KB모바일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08:30~18:00	· 장소 : 견본주택 · 2008.6.13 내일신문에게제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 에응답하지 않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80.8.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 재청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국민 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 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익사항 참조) - 2002.9.5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순위 추천제 대상자가 임의로 2순위 청약 불가)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천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6.4	2008.6.5	농협중앙회 전지점 09:30~16:30	농협중앙회 전지점	
		85㎡이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 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단, 1주택 소유로 인한 1순위 추천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한국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바람.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 (평균접수시간:09:30~16:30)

인터넷/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KB모바일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구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론펙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제 1, 2 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면 -제 3 순위 : 농협중앙회 전지점 청구접수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KB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경과 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사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2)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평택시 및 수도권 거주지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차순위는 접수치 않음.
-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천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천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천제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천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동일순위내에서 평택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미달시에는 차순위에 공급함.
-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 2 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농협중앙회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 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정(1, 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인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주택형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방법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6.14 이후) 평일 10:00~16:30 토/일/공휴일은 제외	청약시 신청한 환불 지정계좌로자동 이체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본인 또는 배우자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등록증)

- 주1. 제3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농협계좌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주2.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농협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주3. 제3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에 대해서는 별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4. 제3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시 신고한 환불계좌에서 출금하여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인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천제 적용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천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천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천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제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발코니 확장 금액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주택형(㎡)	거실	안방	드레스룸	침실1	침실2	침실3	현관	현관창고	세탁실	계	비고
110.3762	5,260,000	3,170,000	1,720,000	2,190,000	1,250,000	-	1,360,000	2,420,000	410,000	17,780,000	
115.5226	5,240,000	3,220,000	1,580,000	1,100,000	1,020,000	-	-	-	770,000	12,930,000	
129.8868	6,270,000	4,050,000	-	4,320,000	880,000	-	-	-	570,000	16,120,000	
130.0114	6,270,000	4,050,000	-	4,330,000	3,130,000	-	510,000	-	580,000	18,870,000	
157.5018	6,380,000	3,800,000	-	2,730,000	3,120,000	2,120,000	-	-	880,000	19,030,000	
162.8888, 167.4112	6,030,000	3,770,000	-	2,190,000	1,420,000	2,160,000	530,000	3,390,000	560,000	20,050,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용(부가세 포함)은 아파트 분양가와 별개이며 별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림.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됨.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08.6.18 ~ 6.20(3일간, 시간 09:30 - 16:30)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 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자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견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때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중·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인터넷/ARS /KB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 민 은 행	금 용 결 제 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 분양관→사이버청약자점→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f2you.com)접속→청약센터→당첨자조회
	이용기간	· 2008.6.13 ~ 6.22(10일간)	
전 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1588-9999(서비스코드 : 704)	☎1369(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및 시간	· 2008.6.13 ~ 6.22(10일간)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span> </span>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KTF, LGT<span> </span>: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PIN 입력 ⇒ 당첨확인</li></ul>	-
	이용기간	· 2008.6.13 ~ 6.22(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8.6.13(09: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농협중앙회	056-01-130002	(주)대우건설 외 1인
중도금/잔금	농협중앙회	056-01-130015	(주)대우건설 외 1인

· 납부방법 : 지정된 분양금 납부일에 농협중앙회 본, 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형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중도금 전납 수납계좌로 타행송금은 불가하며 농협중앙회 본/지점에서만 입금가능함. (입금시 비교란에 중, 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정으로 준비하시기 바림)</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span> </span>: 아파트 계약용) 1통</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세대주 신청기간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li>-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 증명원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li></ul></li></ul>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족대상 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li></ul>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span> </span>: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있는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li></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림.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림.

##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에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 2,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 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번호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입주자저축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중/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입주시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동일세 대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 입주예정일 : 2010년 7월말(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예정)

- \*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 ■ 입주예정자에 대한 용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 개인별 총부채상환비율(DTI), 개인의 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약정된 분양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입주시점에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용자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용자금액이 축소 또는 증가할 수 있음)

## ■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예정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4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품 및 위생기구공사

## ■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림.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림. (필히, 단말기에 인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확인하시기 바림)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적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림.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건물보증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가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입주시점에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용자기관의 담보평가에 따라 용자금액이 축소 또는 증가할 수 있음)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체 품질·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등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 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팔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답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림.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림.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상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시공사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의 규모, 종류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와 인테리어 등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난간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시 발생하는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선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체제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대 내용은 형별, 타입별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2003.6.7일부터 시행)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 전 매도금지 적용됨.
-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이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신청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해야 함.
- 208동, 209동, 210동, 211동 전면에 주유소가 있음.
- 207동 지하1층에 노안정이 있음.
- 단지배치, 향 및 층수에 따라 일조량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216동 하부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 208동 정면에 지하주차장 램프가 계획되어 있음.
- 215동, 216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 : 원)	보증기간
01212008-101-0003400	209,444,900,00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항 제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인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으로서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령,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 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음선 쿠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한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시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시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사업장 소재지
건축 감리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2,327,137,847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472-10번지
전기 감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505,500,211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11
소방, 정보통신 감리	(주)석유훈기술사사무소	292,000,000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26 동원빌딩

■ 사업주체 : 주식회사 선영건설(법인등록번호 : 131311-0059456) 주식회사 한진중공업(법인등록번호 : 180111-0602507)

■ 시 공 자 : 주식회사 대우건설(법인등록번호 : 110111-213789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법인등록번호 : 180111-0602507)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55-1번지(분양문의 ☎ 031-655-0931)

■ 사이버 모델하우스 홈페이지 : <http://www.prugio.com/HOME/2008/ptyong2/>

※ 본 공고는 편식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 호수배치도

■ 주택형별 세대수

- 110㎡ [ 225세대 ]
- 115㎡ [ 142세대 ]
- 129㎡ [ 234세대 ]
- 130㎡ [ 54세대 ]
- 157㎡ [ 144세대 ]
- 162㎡ [ 124세대 ]
- 167㎡ [ 8세대 ]

※ 167㎡는 162㎡ 동의 최상층입니다.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1	1802	1803	1801	1802	1803	1801	1802	1802	1802	1803	1804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2	1702	1703	1704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2	1602	1603	1604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2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2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2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2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2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2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901	902	903	904	901	902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2	902	903	904	901	902	903															
801	802	803	804	801	802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2	802	803	804	801	802	803															
701	702	703	704	701	702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2	702	703	704	701	702	703															
601	602	603	604	601	602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2	602	603	604	601	602	603															
501	502	503	504	501	502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2	502	503	504	501	502	503															
401	402	403	404	401	402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2	402	403	404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1	302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2	302	303	304	301	302	303															
201	202	203	204	201	202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2	202	203	204	201	202	203															
101	102	103	104	101	102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2	102	103	104	101	102	103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1802	1803	1804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2	1803	1804	1802	1803	1804	1802	1803	1804	1801	1802							
1702	1703	1704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2	1703	1704	1702	1703	1704	1702	1703	1704	1701	1702							
1602	1603	1604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2	1603	1604	1602	1603	1604	1602	1603	1604	1601	1602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901	902	903	904	901	902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801	802	803	804	801	802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701	702	703	704	701	702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601	602	603	604	601	602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501	502	503	504	501	502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401	402	403	404	401	402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1	302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201	202	203	204	201	202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101	102	103	104	101	102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210동				211동				212동				213동				214동				215동				216동			